

대구예술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 2007.12.06. 교무위원회)

(개정 2009.01.19. 법인이사회)

(개정 2010.02.19. 법인이사회)

(개정 2010.08.13. 법인이사회)

(개정 2012.02.09. 법인이사회)

(개정 2012.06.21. 법인이사회)

(개정 2013.05.29. 법인이사회)

(개정 2019.06.26. 법인이사회)

(개정 2023.01.06. 법인이사회)

(개정 2025.07.14.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임용규정 제2장에 의거하여 교원의 업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결과를 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육여건 조성 및 교육, 연구, 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3조(업적의 구분) 교원의 업적(이하 “업적”이라 한다)은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평가내용 및 기간

제4조(교육업적) ① 교육업적의 평가는 수업담당 시수, 강의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학칙에 의한 성적 평가, 학생지도 열의, 강의평가를 기준으로 학기단위로 평가하여 누계 합산한다.

② 교육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및 평점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연구업적) ① 연구업적의 평가는 전시, 연주, 학술논문, 저서, 학위논문, 학술관련 수상 및 상.훈, 외부연구비 수탁 실적 등으로 평가하여 누계 합산하며 1년 100점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2.19)

② 연구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평점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③ 중복 및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중복 연구업적은 본인이 기 발표한 논문, 저서, 작품발표 등에 있어서 동일 작품 및 유사한 업적을 말한다.

2. 표절 연구업적은 타인이 발표한 논문, 저서 또는 창작물 내용의 일부를 명시된 참조 없이 업적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한 업적을 말한다.

④ 중복 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피평가자

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연구업적의 평가를 위해 부문별로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제출목록은 업적평가항목 및 평점표에 따른다(별표2, 별표3, 별표4)(개정 2010.2.19)

1. 저서 및 창작부문 : 원본 및 사본
2. 논문 : 학술지 또는 논문집 원본 및 별쇄본(또는 사본)
3. 학술대회 발표 :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초록집 원본
4. 공연.발표 : 팸플릿 원본 및 관계 증빙자료
5. 기타 : 관계 증빙자료(연구보고서의 경우 보고서 원본 포함)

제6조(봉사업적) ① 봉사업적의 평가는 교내봉사, 교외봉사, 학회활동, 기타 봉사활동, 상훈실적, 각종회의 및 연수회 참여실적 등을 기준으로 학기단위로 평가하여 누계 합산한다.

② 봉사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4와 같다.

제 3 장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제7조(구성)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필요시 각 영역별로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종합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 소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소속 위원이 피평가자일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평가절차

제9조(평가절차) ① 우리 대학교 재직중인 교원은 평가대상기간의 업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우리 대학교 학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 출력물과 관련 증빙서류를 평가 대상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검토.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평가의 결과는 매회차 마다 기록 관리하여 대학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교육연구수준의 재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④ 위원장은 업적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⑤ 교내논문심사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 2(평가대상기간) ① 업적평가는 매년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계약) 관련 업적심사는 해당교원의 재임용(계약) 만료일 4개월 전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2.9)

(단, 2004년 평가대상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이의 신청 및 처리) 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출서류 미비 등 평가대상교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총장에게 보고 후 그 재심결과를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11조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급여산정 기초자료 등의 심사에 활용한다.(개정 2010.2.19)

제12조(재임용 기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9)(개정 2010.2.19)

(개정: 전임강사명칭폐지 2012.6.21)

직 위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평점			필요 최저 평점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조 교 수	3년	660	300	180	1,140
부 교 수	5년	1,100	500	300	1,900
교 수	6년	1,320	600	360	2,280

② 연간 (최근 재임용, 승진기준일 기준) 연구업적 취득점(100점) 미취득시 직위에 따른 평가 대상기간의 총평점과 관계없이 재임용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2.19)

가. 예·체능계열 : 1년 최소 50점 이상을 취득하고 다음해에 전년도 취득점을 포함하여 총 200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개정 2010.2.19)

나. 인문·사회·경상계열 : 1년 100점 미취득시 다음해에 전년도 취득점을 포함하여 총 200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개정 2010.2.19)

③ 우리 대학교 임용(재임용기간포함)후 3년마다 별표2, 별표3의 필수항목을 택1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시 직위에 따른 평가대상기간의 총평점과 관계없이 재임용하지 않는다.(신설 2012.2.9)

제13조(승진임용 기준) ① 승진소요년수에 달한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6)(개정 2009.1.29)(개정 2010.2.19)

(개정: 전임강사명칭폐지 2012.6.21)

직 위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평점			필요 최저 평점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조 교 수->부교수	4년(승진임용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4년 이내)	920	400	280	1,600
부 교 수->교 수	5년(승진임용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	1,150	500	350	2,000

② 연간 (최근 재임용, 승진기준일 기준) 연구업적 취득점(100점) 미취득시 직위에 따른 평가 대상기간의 총평점과 관계없이 승진임용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2.19)

가. 예·체능계열 : 1년 최소 50점 이상을 취득하고 다음해에 전년도 취득점을 포함하여 총 200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개정 2010.2.19)

나. 인문·사회·경상계열 : 1년 100점 미취득시 다음해에 전년도 취득점을 포함하여 총 200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개정 2010.2.19)

제14조 (평가결과의 관리) 업적평가결과는 교무처에서 관리한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15조(기타사항)① 휴직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그 기간은 재임용 및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임용기간 계산시 산입할 수 있다.

② 공식적인 해외연수 등의 기간에는 연구업적만을 평가하며, 교육 및 봉사업적은 직전(또는 직후) 학년도의 업적으로 갈음한다.

③ 매 학년도 분야별로 교육 및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교원에게는 봉사업적의 교내 수상항목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④ 처장이상 보직자의 교육업적, 봉사업적, 연구업적은 전체 전임교원의 업적별 평균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수연구업적은 처장보직이 최근2년이상일 경우 면제 할 수 있다.(신설 2013.5.29.)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중 제12조 및 제13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2000년 9월 1일자로 재임용 심사대상 교원 및 2000년 10월 1일자 승진임용 심사대상 교원은 이 규정 이전의 교원임용규정을 적용한다.

③ 2001년 3월 1일 이후로 재임용 및 승진대상 교원의 교육 및 봉사업적은 2000년 9월 1일 이후 발표된 업적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

한다.

⑤ 제12조, 제13조는 시행년도 기준으로 영역별평점 및 필요최저 평점계를 변경 전, 후 구분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1.29)

⑥ 연구업적 1년 최대 인정 평점은 150점이며 단, 전임강사는 50점, 조교수는 100점, 부교수는 150점, 교수는 200점까지 최대 추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9.)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교원의 업적심사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 업적평가는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10년 8월 13일 개정 규정은 2011학년도 업적평가에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1월,2월의 업적은 2012학년도 1학기 업적에 포함한다.

② 제12조 (재임용 기준) ③항 3년의 첫해는 201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개정 2012.6.21.)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개정 2013.5.29.)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기타사항)④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별표 4)의 1-7 대학기여도 신입,편입생 추천 및 미추천은 2019년 3월 입학자까지 취득한 점수는 인정한다.

부 칙(개정 2023.01.0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07.1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9)(개정 2010.2.19)(개정 2010.8.13)(개정 2012.2.9.)(개정 2023.01.06.)(개정 2025.7.14.)

(별표1) **교육업적(전계열 공통) 평가항목 및 평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비고
1.담당수업 시수	1-1 강의시수의 적합성<주>		최대 16시간까지 가점
	◦ 주당 12시간	100	
	◦ 주당 11시간	90	
	◦ 주당 10시간	80	
	◦ 주당 9시간	70	
	◦ 주당 8시간	60	
	● (주당시간 이상, 이하 동일방식 대입)		
2.수업이행 상태	2-1 강의계획서 작성제출		
	◦ 기일 후 5일 이내 제출(강좌당)	-5	
	◦ 기일 후 10일 이내 제출(강좌당)	-7	
	◦ 미제출(강좌당)	-10	
	2-2 강의평가의 평균 결과(10점만점기준)	10점기준×3	
	◦ 6점 이하 과목(강좌당)	-10	
2-3 수업결손 여부			
	◦ 무단 휴강, 보강실시(강좌당)	-10	
	◦ 무단 휴강, 보강미실시(강좌당)	-50	
3.출석부 관리	3-1 출석부 정리		
	◦ 기일후 5일 이내 제출(강좌당)	-10	
	◦ 기일후 10일 이내 제출(강좌당)	-15	
	◦ 미제출(강좌당)	-50	
4.성적관리	4-1 성적제출		
	◦ 기일후 5일 이내 제출(강좌당)	-10	
	◦ 기일후 10일 이내 제출(강좌당)	-15	
	◦ 미제출(강좌당)	-50	
	4-2 성적정정 빈도	-10	
◦ 정정기간 이후 정정이 있는 경우(강좌당)			
5.학생지도	5-1 공식적학교 행사시 임장지도 참여<주>	-2	
	◦ 임장지도 미참여시(건당)		
	5-2 동아리 지도교수 활동<주>	2(최대4)	동아리활동 년2회 이상인 경우
	5-3 학생상담 실적<주>	1(최대30)	상담횟수당 1점씩
	5-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별표1)

교육업적(전계열 공통) 평가항목 및 평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비고
5.학생지도	5-5 각전공 전학년 모집정원의 중도탈락(제적)율		
	◦ 3%이상 전공의 교원	-10	
	◦ 5%이상 전공의 교원	-15	
	◦ 10%이상 전공의 교원	-20	
	◦ 15%이상 전공의 교원	-25	
	◦ 20%이상 전공의 교원	-30	
6.행정협조	6-1 행정협조(교수업적평가자료, 학생상담실적, 입시홍보결과서, 기타등 기일내 제출)		
	◦ 기일후 5일내 제출(건당)	-5	
	◦ 기일후 10일내 제출(건당)	-10	
7.상벌	7-1. 상(교육부문 관련 수상)		
	◦ 국제적 규모	30	
	◦ 전국적 규모	20	
	◦ 기타	10	
	7-2 벌(교육부문 관련 징계)		
	◦ 중징계(정직,해임,파면)	-200	
	◦ 경징계(감봉)	-100	
	◦ 경징계(견책)	-50	
	◦ 서면경고	-30	
	◦ 주의	-20	

1. 담당수업시수(개정 2025.7.14.)

- 행정상의 문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시수에 미달되어도 기준시수를 담당한 것으로 본다.
- 책임시간이 12시간 이내로 된 보직자의 경우에는 12시간을 강의한 것으로 본다.
- 수강학생이 80명이상일 경우 1.5배, 100명이상일 경우는 2배로 인정한다.

5-1 공식적 학교 행사시 임장지도 참여(개정 2012.2.9)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대동제, 야외현장수업(1,2학기), 졸업여행, 기타 행사계획서 제출 승인행사(기간 중 일부 참석은 불인정)

5-2 동아리 지도교수 활동(개정 2012.2.9)

- 동아리 행사시 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보고서(임장지도내용포함) 제출
- 동아리 활동내역 증빙 제출. 예:동아리회비 관리대장, 매주·매월 등 참석 대장,활동사

진 등 (위 기본자료 미제출시 불인정)

5-3 학생상담 실적(개정 2012.2.9.)(개정 2025.7.14.)

- 생활상담은 학년 지도교수, 취업·진로 상담은 학년 지도교수 및 전체 교수

5-4 취업실적(해당학기만 반영함)(개정 2012.2.9.)

표1),표2)(삭제 2023.01.06.)

※ 연구년, 휴직, 해외여행, 파견 등으로 인하여 평가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전(또는 직후) 학년도의 업적으로 같음한다.

(개정 2009.1.29)(개정 2010.2.19.)(개정 2012.2.9.)(개정 2013.5.29.)

(별표2)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 I

평가항목	평점
I. 저서	
1. 국제수준의 전문학술서 출판(원어출판)	200
2. 국내수준의 전문학술서 출판	150
3. 공저에 의한 출판(국내,국외) 2인:50점, 3인:40점, 4인이상:30점	50,40,30
4. 번역(국문을 외국어로 번역, 외국어를 국문으로 번역) 단, 법령에 의하여 발행되지 아니한 강의용 저서와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참고서(1종은 제외)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00
II. 논문	
1. 국제학술지(학회지)에 발표	200
2. 국제학술대회 자료집(전문게재)	80
3.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발표 : (SCI, SCI-E, SSCI, A&HCI 등재학술지)	150(필수항목)
4. 전국규모 국내학술지(학회지)에 발표(주)	70
5. 전국규모 학술대회 자료집(전문게재)(주)	40
6. 기타 논문집에 발표	30
7. 국내 일반 특수지(잡지)에 논문 발표	20
8. 예·체능전문지 기고	10
9. 석사학위 취득논문	100
10. 박사학위 취득논문 단, 석사 및 박사학위(취득자) 논문을 2인(지도교수포함) 공동명의로 게재된 때에도 학위취득자 단독논문으로 인정한다.	200
11. 국제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및 초록게재	20
12. 국내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및 초록게재	10
III. 연구사업(용역사업)	
1. 연구사업의 일원으로 연구	50
2.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70
3. 단독용역에 의한 연구 단, 학술적 가치를 지닌 연구보고서에 한한다.	100
4. 인터넷강의, 위탁교육 프로그램 및 계약형 프로그램 개발 (공동개발시 1/n) (개정 2013.5.29.)	30
5. 교수창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유치(건당) (신설 2013.5.29.) (공동개발시 1/n, 고유번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50 (최대 100점)
IV. 지적재산권 [신설]	
1. 등록 - 국제특허	100
2. 등록 - 국내특허	50
3. 등록 - 의장등록,실용신안 등	30
4. 출원 - 특허,의장등록,실용신안 등	20
V. 수상	
1. 훈장(국민포장급 이상)	200
2. 표창(국무총리급 이상)	50
3. 표창 및 상(장.차관급 이상)	30
VI. 환산율(%)	
1.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
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70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50
4. 4인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30

I. 저서(개정 2010.2.19)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비율

저서는 “수/수/수”인 경우 100%, “수/수/우”인 경우 90%, “수/우/우”인 경우 80%，“우/우/우”인 경우 70%, “미” 이하가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교과용 도서(강의용 자료나 참고서)등은 인정치 아니하며, 개정본은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이 있는 것으로 전체내용의 1/3이상 개정된 개정판

II. 논문 : 논문은 전공과 관련된 것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70매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된(전국규모학술지급 이상)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형식과 분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II. 4, 5. 우리 대학교 “전국규모 학술지 일람표”에 등재된 학술지에 한함.

전국규모 학회-예술계는 회원수가 200명, 비예술계는 회원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전국을 5개 영역(서울,경기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경남권, 전라남북도권, 충청남북도권)으로 구분하며 5개개영역에서 골고루 회원이 분포하여야 한다.

II와 III의 연구내용이 동일할때는 한가지만 인정한다.(용역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한 경우는 중복 인정하지 않음)

IV. 수상은 연간 인정 상한점에 추가로 인정한다.

(개정 2009.1.29)(개정 2010.2.19)(개정 2010.8.13)(개정 2012.2.9)

(별표3)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 II

평가항목	평점
I. 사진.미술,디자인분야에 속한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전 특선 1회	50
2. 국제전 입선 1회	30
3. 국내는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이상의 공인된 장소에서의 개인전, 국외는 각국에서 전시장으로 공인된 장소에서의 개인전 *발표전⇒개인전 계획서제출, 발표후⇒개인전 촬영동영상 30일 이내 제출	100 필수항목
4. 국내·외의 전시장으로의 공인된장소에서의 2인전	50
5. 국내·외의 전시장으로의 공인된 장소에서의 3인전	30
6. 공인된 전람회의 초대전(초대출품) (1회 : 30점, 2회 : 20점 - 최대 50점)	50(년1회)
7. 3개국이상 참여하는 공인된 단체의 해외(국제)전	30
8. 1점이상의 신작품을 공인된 단체전에 출품(1년 최대 100점)	10
9. 우리 대학교 교수 미전 출품(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경우)	10
10. 예술전문지 지상전 신작품 3점이상 출품	10
11.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참여	30
12. 국제전시기획(국내,외 전문예술가로 구성된 단체)	20(년2회)
13. 국내전시기획(전문예술가로 구성된 단체)	10(년2회)
II. 음악분야에 속한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는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이상의 공인된 장소, 국외는 각국에서 공연장으로 공인된 장소에서의 개인주체(연주회,작곡)발표회, 악단전곡 지휘, 작곡집(음악회 1회분이상 악보집)출간 *발표전⇒개인발표회,지휘계획서제출, 발표후⇒발표,지휘촬영동영상30일내제출	100 필수항목
2. 국내·외 공연장으로 인정된 장소에서의 2인주체공연(전곡연주)	50
3. 국내·외 공연장으로 인정된 장소에서의 3인이상 중주 공연(전곡연주)	50
4. 편곡집 발간(음악회 1회분 이상)	50
5. 음반제작(공인된 음반제작기획사나 레이블에서 제작 또는 유통한 정규음반, 디지털음반) 단, 인정받은 업적이 음반제작된 경우는 제외함	
1) 개인 또는 개인이 주체가 된 팀이름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전곡연주나 작곡 또는 지휘한 음반	100
2) 팀원으로 전곡연주,작곡,편곡 또는 개인으로1/2이상연주,작곡,지휘,편곡한 음반	50
3) 그 외 연주,작곡,지휘,편곡한 음반(년3회이상은10점)	30
6. 공인된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음악제의 연출, 기획, 감독 또는 1/2이상 작곡, 편곡, 반주, 지휘	30
7. 공인된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음악제의 일부분 연출, 기획, 감독 또는 1/2미만의 작곡, 편곡,반주, 지휘	20
8. 공인된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의 일반 참여(1년 최대 100점)	10
9. 100점에 해당하는 공연(발표회)의 전곡반주, 전곡지휘	30
10. 2인 주체 공연에 해당하는 공연(발표회)의 전곡반주, 전곡지휘	30
11. 공인된 국제음악제에 독주자,독창자,협연자또는발표자로 초대되어 연주했을 때	50
12. 우리 대학교 교수음악회 출연(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경우)	10

*전시장 또는 공연장으로 공인된 장소 외에서 발표된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별표3)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 II

평가항목	평점
III. 체육·무용분야, 예술치료분야에 속한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심판자격을 취득	100
2. 국내 심판자격을 취득	30
3. 국제 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	50
4. 국내 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	20
5. 지역·대학규모의 스포츠지도자 자격취득	10
6. 국내는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이상의 공인된 장소에서의 개인무용발표회, 국외는 각국에서 공연장으로 공인된 장소에서의 개인무용발표회 *발표전<=>개인발표회 계획서제출, 발표후<=>개인발표회 촬영동영상 30일 이내 제출	100 필수항목
7. 공인된 장소의 공동(2~3인)발표회	50
8. 공인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무용공연의 안무, 연출, 감독, 출연 등 (1년 최대 100점)	10
9. 국제무용제 주연 또는 안무	100
10. 국제무용제 예술감독	50
11. 국제무용제 출연	30
12. 전국규모무용제 주연 또는 안무	50
13. 전국규모무용제 예술감독	30
14. 전국규모무용제 출연	20
15. 공인된 단체가 개최하는 무용제 주연 또는 안무	30
16. 공인된 단체가 개최하는 무용제 예술감독	20
* 공연에서 안무, 연출, 감독, 출연이 중복될 경우에는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	
IV. 예술치료분야에 속한 연구실적 평가기준	신설
1. 국제 공인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자격 취득	30
2. 국내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자격 취득	30
3. 공인된 장소의 개인 미술치료적, 음악치료적 작품 발표	20
4. 공인된 장소의 2인이상 미술치료적, 음악치료적 작품 발표	10
* 작품발표시 과거 중복되는 내용은 인정안함.	

※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비율(전시(개인전), 공연(독창, 독주 및 주연급 공연))
“수/수/수”인 경우 100%, “수/수/우”인 경우 90%, “수/우/우”인 경우 80%,
“우/우/우”인 경우 70%, “미” 이하가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개정 2010.2.19)

※ 수상은 연간 인정 상한점에 추가로 인정한다.

※ 예능계 분야의 연구업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주부분 : 팸플릿 원본과 관계 증빙자료(녹화테이프 등)(개정 2010.2.19)

② 작곡부분 : 악보와 녹화 또는 녹음테이프 및 관계 증빙자료.

③ 사진.미술부분 : 팸플릿 원본, 스냅사진(팸플릿에 최소 신작품수(개인발표 15점, 2인발표 10점, 3인발표 7점)이상 미수록시) 또는 비디오 촬영테이프 등 관계 증빙자료(개정 2010.2.19)

※ 동일한 연구업적이 중복되어 적용될 때는 상위점을 부여한다.

※ 사진영상, 미술, 디자인계열

① 개인발표 : 본인의 신작 15점(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이상으로 구성된 개인작품전 또는 발표회를 말한다.

② 2인발표 : 본인의 신작 10점(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이상으로 구성된 2인작품전 또는 발표회를 말한다.

③ 3인발표 : 본인의 신작 7점(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이상으로 구성된 3인작품전 또는 발표회를 말한다.

※ 음악·공연·체육계열

① 개인, 2인, 3인발표 : 동일 레퍼토리는 과거 5년 이내 발표하지 않은 것에 한해 인정함.(개정 2012.2.9)

1.6 공인된 전람회의 초대전(초대출품)(개정 2010.2.19)(개정 2010.8.13)

가. 광역시·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미술대전, 사진대전, 공예대전, 서예대전, 섬유미술제, 산업디자인전, 패션발표 및 전시회

나. 전문예술가들로 구성되고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공인된 단체전(협회회원전, 화랑초대전, 국내·외 교류전)

11.6 공인 전문단체(개정 2010.2.19)

가. 전문단원(학생 및 일반인 제외)으로 구성되고 정기공연을 갖는 단체

나. 국립단체, 광역시급 이상의 시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개정 2009.1.29.) (개정 2010.2.19.) (개정 2012.2.9.) (개정 2013.5.29.) (개정 2019.06.26.)

(별표4) **봉사업적(전계열 공통) 평가항목 및 평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비고
1.교내 봉사	1-1 행정보직수행(주)		2개항목이상 해당자는 상 위점 부여
	◦부총장	15	
	◦본부 각 부처장	10	
	◦학부장	7	
	◦전공주임.부속.부설기관장,홍보위원장,	5	
	1-2 위원회 활동(주)		
	◦상설위원회 위원	2점씩(상한10)	
	◦각종 위원회 위원	2점씩(상한10)	
	◦특임활동	5점씩(상한10)	
	1-3 시험 출제. 채점. 감독 활동		
	◦신.편입생 입학전형	5점씩(상한15)	
	◦실기대회(우리 대학교 전체규모)	3점씩(상한 9)	
	1-4 대학홍보활동		1일 참여시 3점
	◦고등학교 및 학원 방문(입시설명회)	3점씩(상한30)	
	1-5 전체교수회의 참여 실적		
	◦전체교수회의 미참석(건당)	-5점	
	1-6 교내 연수회 참여 실적		
	◦교내연수회참석	3점씩	
	◦교내연수회미참석 (건당)	-5점	
	1-7 대학 기여도		
	◦ [삭제]	5점씩	
	◦ [삭제]	-50점	
	◦장학금100만원만원유치(단,100만원증액유치시마다+5 점)	5점씩	
	◦발전기금100만원유치(단,100만원증액유치시마다 +5 점)	5점씩	
	◦그 외 총장이 인정하는 기금유치: 위와 동일함		
	1-8 공인된 전국규모대회의 우수상이상의 수상지도실적		
◦대상	5점		
◦우수상, 최우수상	3점		
1-9 학생 창업지도 실적(창업1건당)		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비고
2.교외 봉사	2-1 강연.자문.언론 활동(주)		최대 8점
	◦강연	2	
	◦국가기관 자문위원	2	
	◦공중파 언론매체 특집	2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2	
	◦그 외 위원 및 활동	1	
	2-2 심사 및 출제위원(주)		최대 6점
	◦도단위 이상 심사 및 출제위원 (공인된 단체전의 운영 및 심사위원)	2	
	◦학위논문심사 박사학위논문 심사 석사학위논문 심사	2 1	
	2-3-1 산학협력(주) 산학연 위탁사업 실적 (개정 2013.5.29.)		최대 20점
	◦1,000만원 미만	5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미만	10	
	◦5,000만원 이상	20	
	2-3-2 신규 산관학연 위탁사업 실적(건당) (신설 2013.5.29.)	10	최대 20점
	2-3-3 산학협력 자문 및 기술·경영지도 자문료 10만원당 (신설 2013.5.29.)	2	최대 8점
	2-3-4 산학협력 협약(MOU) 체결(건당) (신설 2013.5.29.)	2	최대 8점
	2-3-5 산학협력 방문특강 및 기타산학협력 교육활동 (건당) (신설 2013.5.29.)	2	최대 8점
	2-4 특별봉사		최대 5점
	◦무보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1일이상 참여	1	
	2-5 학회활동(주)		최대 8점
◦학술단체 임원	2		
◦학술단체 학술회의 사회,발표,토론자 참여	2		
◦학술단체 학술지 게재 논문 심사	2		
◦그 외 단체 임원	1		
3.수상	3-1 상(봉사부문 관련 수상)		최대 15점
	◦국제적규모	15	
	◦전국적규모	10	
	◦기타(광역단체장급 이상의 수상)	5	

※ 평가기간은 6개월 단위임

1-1. 행정보직수행 : 업무량과 기여도에 따라 평가(교내보직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6) X 수행개월수로 배점함)

1-2. 위원회 활동(연중 각 위원회 개최횟수에 따라 1회 2점씩 배점. 단, 위원회 활동에 대한 상한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8.13)

- 특임활동(개정 2010.2.19)

총장의 위촉에 의한 특별업무에 대해 그 결과의 성취도에 따라 총장이 평가함

- 상설위원회 :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개정 2010.2.19)

- 각종위원회 : 학생지도위원회,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기획위원회, 시설기자재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장학위원회, 상벌위원회, 교과과정개편위원회,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등 (개정 2013.5.29.)

1-6 삭제(개정 2010.8.13)

1-7 입학부서에서 추천 확인을 받고 최종 등록할 경우에 가점(개정 2010.2.19)

2-1. 강연 :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1시간 이상 강연한 경우 배점함.

자문위원 : 국가기관(광역 자치단체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위촉에 의해 3개월 이상 자문활동을 수행한 경우 배점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 전공과 관련하여 중앙, 지역의 일간신문에 논평, 서평, 칼럼 등을 기고하거나 방송매체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

2-2. 심사 및 출제위원 : 기초단체장급 이상의 공인단체에 의해 위촉된 심사 및 출제위원, 타대학 교원인사 심사, 석박사학위 심사, 국가고시 심사

2-3-1 산학협력 : 교외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되는 외부 위탁과제의 책임자 및 주요 공동참여자에 대해, 평가대상기간 중에 외부로부터 입금된 연구비가 있을 경우에 인정

2-5. 학술단체

인문사회일반-전국규모학술지를 발간하는 단체.

예능계-사단법인 예능 단체, 사단법인 협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사)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에 한하여 배점

※ 연구년, 휴직, 해외여행, 파견등으로 인하여 평가할 수 없을때에는 직전(또는 직후) 학년도의 업적으로 갈음한다.

3. 수상은 교내.외 봉사 실적 배점 상한점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한다.